#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92

발의연월일: 2020. 11. 12.

발 의 자:서영교·오영환·김홍걸

한병도 • 한정애 • 김영배

임오경 · 이해식 · 김민철

민홍철 · 이원욱 · 송옥주

임호선 · 윤관석 의원

(1491)

#### 제안이유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3일 발표함. 이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게 됨.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시가격 6억원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 도입(안 제111조의2)
- 나.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규정 정비(안 제112조 및 제113조)
- 다. 1세대 1주택자 선별 등을 위한 효율적 과세자료 연계 및 처리 방 안 마련(안 제123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 호제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 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2조제1항제1호 중 "제111조의 세율"을 "제111조의 세율(또는 제11 1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한다.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 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 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 수집과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

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 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
-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 4.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 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 5.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과세자료의 요 청·처리·분석·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적용 기한) 제111조의 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 신 설 &gt;</u>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
	3호제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
	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
	<u>을 적용한다.</u>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30,000원+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 액의 1,000분의 3.5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
	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
	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
	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1항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 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 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 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 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 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세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b>.</b>	

-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u>제</u>
  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
- 2. (생략)
- ② · ③ (생 략)

제113조(세율적용) ① (생 략)

-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월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 ~ ⑤ (생 략)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종합 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 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 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

1 <u>제111</u>
조의 세율(또는 제111조의2제
<u> 1항의 세율)</u>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세율적용) ① (현행과 같
<u>이</u> )
②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
율(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
<u> </u>
③
<u>제111조</u>
제1항제3호의 세율(또는 제111
조의2제1항의 세율)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
담기구의 설치 등)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
한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
<u>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u>

- 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를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보관 리 전담기구의 조직 · 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 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종 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부 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 (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1세대 1 주택자 판단 등 재산세 및 종 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한 과 세자료 수집과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 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 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 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 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 한 등록전산정보자료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1 제60조에 따른 임대 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 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

-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 세자료
- 4.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 선 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특 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 5.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한 부동산 관련 자료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담 기구의 조직·운영 및 과세자 료의 요청·처리·분석·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